

교원 전형·임용 지침

제 정	:	2001. 12. 28.
개 정	:	2003. 9. 1.
개 정	:	2005. 11. 1.
개 정	:	2007. 10. 29.
개 정	:	2010. 7. 1.
개 정	:	2011. 6. 1.
개 정	:	2011. 11. 1.
개 정	:	2013. 5. 1.
개 정	:	2013. 11. 1.
개 정	:	2016. 9. 1.
개 정	:	2018. 5. 21.
개 정	:	2019. 12. 24.
개 정	:	2020. 6. 15.

I. 교원 전형

1. 전형 원칙

금강대학교에 근무할 교원의 전형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 분야 전공자나 중견교수 등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

2. 전형 절차제

가. 전임교원

- 1) 교학지원처는 교수채용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 2) 교학지원처는 수립된 교수채용기본계획(안)을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 3) 교학지원처는 교수채용 공고문을 지원마감일 15일 전까지 초빙분야, 초빙인원, 지원자격 등을 명시하여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하여 지원서류를 접수한다.
- 4) 교학지원처는 1차 기초심사(서류) 및 2차 전공심사(연구실적물)를 위하여 분과전형위원회를, 공개강좌 및 면접심사를 위하여 신입교원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수채용일정을 통지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5) 교학지원처는 접수된 1차 서류를 분과전형위원에게 인계한다.
(교수임용지원서, 연구실적 목록, 연구 및 수업계획서[양식/교인-1, 2, 3], (영문)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6) 분과전형위원은 지원서류를 심사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1차후보자선정 기초심사(서류)기준 및 심사표[양식/교인-4]
- 7) 교학지원처는 분과전형위원의 기초심사(서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신입교원전형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1차후보자를 다음 기준으로 선정한다.

▶ 1차 후보자선정기준

접수인원	선정인원
15명 이하	3-5명
16-30명	5-7명
31명 이상	7-10명

1차 후보자선정 보고서[양식/교인-4-1]

- 8) 교학지원처는 전공심사(연구실적)를 위하여 1차후보자에게 임용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등재지 이상 실적물 2편 이상을 제출 받는다.
- 9) 교학지원처는 분과전형위원회에 전공심사(연구실적물)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를 받는다.

전공심사(연구실적)보고서[양식/교인-5]

- 10) 교학지원처는 2차후보자 선발을 위하여 분과전형위원의 기초심사(서류)와 전공심사(연구실적물)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2차후보자(공개강좌 및 면접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입교원전형위원회에 상정·심의한다.
- 11) 신입교원전형위원회는 기초심사(서류)와 전공심사(연구실적물)결과를 토대로 2차 후보자를 다음 기준으로 선정한다. 다만, 전공심사(연구실적)심사위원 중 채용분야에 대한 논문의 합당도에서 50% 이상의 심사위원이 불합당으로 판정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2차 후보자선정기준

접수인원	선정인원
15명 이하	2명이상
16명 이상	3명이상

2차 후보자선정 보고서[양식/교인-6]

2차 후보자선정 기준 및 심사표[양식/교인-7]

- 12) 신입교원전형위원회는 2차 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강좌 및 면접을 실시한다.
공개강좌 및 면접평가서[양식/교인-8]
- 13) 신입교원전형위원회는 공개강좌 및 면접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최종후보자 선정보고서[양식/교인-9]
- 14) 교학지원처는 최종후보자에 대한 직위별 경력과 연구실적을 산정한다.
대학교원임명제청자조서[별첨 1], 연구실적점수 산정표[별첨 1-1]
- 15) 교원인사위원회는 교학지원처에서 산정한 직위별 경력과 연구실적을 심의하고 임명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 16) 교학지원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에 대한 임용을 법인 이사회에 제청한다.

나. 강의전담교원

- 1) ~ 3)항 전임교원 전형절차와 동일
- 4) 교학지원처는 1차 기초심사(서류)를 위하여 분과전형위원회를, 공개강좌 및 면접심사를 위하여 신입교원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수채용일정을 통지한다. 단, 총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5) 교학지원처는 접수된 1차 서류를 분과전형위원에게 인계한다. 단, 접수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전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5.>
- 6) 분과전형위원은 지원 서류를 심사하여 1차 기초심사(서류)통과자를 다음 기준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 1차 기초심사(서류)통과자 선정기준

접수인원	선정인원
15명 이하	3명 이상
16-30명	5명 이상
31명 이상	7명 이상

강의전담교원 기초심사(서류)기준 및 심사표[양식/교인-나, 나-1]

1차 기초심사(서류)통과자 선정보고서 및 심사표[양식/교인-다]

- 7) 교학지원처는 분과전형위원의 기초심사(서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8) 신입교원전형위원회는 1차 기초심사(서류)통과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외국인 강의전담교원 채용 시에는 분과전형위원회에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면접평가서[양식/교인-라]
최종후보자 선정보고서[양식/교인-마]
- 9) 교학지원처는 최종후보자에 대한 직위별 경력을 산정한다.
대학교원임명제청자조서[별첨 1]
- 10) 교원인사위원회는 교학지원처에서 산정 한 직위별 경력을 심의하고 임명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 11) 교학지원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에 대한 임용을 법인 이사회에 제청한다.

3. 분과전형위원, 신입교원전형위원회 및 교학지원처 조치사항

가. 분과전형위원

- 1) 구성
해당학부장, 총장이 지명하는 전공 관련 교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단, 강의전담교원 채용 시는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2) 임무

가) 기초심사(서류)

1차후보자선정 기초심사(서류)기준 및 심사표[양식/교인-4]

나) 전공심사(연구실적물)

전공심사(연구실적)보고서[양식/ 교인-5]

나. 신입교원전형위원회

1) 구성

총장, 교학지원처장, 기획관리처장, 해당학부장, 총장이 지명하는 2인 이하의 전공 관련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2) 임무

가) 1, 2차 후보자 선정

1, 2차 후보자 선정 보고서[양식/교인-4-1, 6], 2차 후보자선정기준 및 심사표 [양식/교인-7]

나) 2차후보자 공개강좌 및 면접

공개강좌 및 면접평가서[양식/교인-8]

다) 최종후보자 선정

최종후보자 선정 보고서[양식/교인-9]

다. 교학지원처

가) 교수채용기본계획(안) 수립

나) 분과전형위원, 신입교원전형위원회 구성

다) 신입교원전형·임용 지침 및 일정통지

라) 교수채용 대중매체 게시 공고

마) 지원 서류접수

바) 서류 및 연구실적물 심사의뢰

사) 최종후보자 경력 및 직위별 연구실적 점수 계산

대학교원임명제청자조서[별첨1], 연구실적 점수 산정표[별첨1-1]

아) 기타 행정업무

II. 교원 임용

1. 임용 원칙

교원의 전형 절차에 따라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교육 및 연구경력, 연구실적 평가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용 교원의 교육 및 연구경력 산출

신규임용 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율 산출기준(별첨2, 이하 “경력산출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출한다.

- 가. 학위취득에 따른 경력 산출은 취득한 학위의 개수와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석사학위 취득은 2년까지, 박사학위 취득은 3년까지 인정하며 합산하여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에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한 경우 중복된 기간은 한 기관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 다. 대학에서 근무한 조교, 시간강사 및 코치 등의 경력은 경력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각 경력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각 기관별 경력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외 4년제(2년제 포함) 정규대학, 공공 연구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인정한다. 다만,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근무한 경력은 70%까지,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근무한 경력은 50%까지만 인정한다. 여기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란 월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유급 연구직을 의미하며, 무급 또는 부정기 급여 연구원의 경우는 박사학위 취득자 50%, 석사학위 취득자 30%로 산출하며 학사학위 취득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 바. 산업체 등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산업체 등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70%로 인정한다.
- 사.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되 국가에 따라 1년의 근무를 9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1년으로 산출한다. 다만, 객원교원, 초빙교원, 연구교원 등으로 외국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은 계약서(증빙서)에 명시된 기간만을 인정한다.
- 아. 대학(2년제 이상)에서 비전임교원(객원, 초빙, 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주당 수업시간이 9시간 이상인 경우 70%, 9시간 미만인 경우 60%로 산출한다.

3. 임용 교원의 연구실적평가

- 가. 신규임용 교원의 연구실적물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한다. 단,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근무경력, 업무실적, 포상실적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실적에 준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박사학위논문
 - (2) 국내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학술논문
 - (3) 국외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학술논문
 - (4) 출판된 학술회의 논문
 - (5) 학술저서
 - (6) 통번역활동 실적

나. 신규임용 교원의 연구실적은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 (1) 연구실적의 평가는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기간을 1년 단위별로 평가 하되, 인정비율은 1인의 경우는 100% 공동저자인 경우는 2인 70%, 3인 50%, 4인 30%, 5인 이상은 100%를 발표자수로 나눈 비율로 하되, 주저자(또는 책임저자 등)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2) 박사학위 논문은 200점으로 인정한다.
- (3) 국내외 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3조(연구업적평가)를 따른다.
- (4) 학술회의 논문은 심사제도가 있는 학술회의 논문으로서 논문집(proceedings) 으로 발간된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국내외 학회 학술논문 평가점수의 최대 50%이내에서 인정한다.
- (5) 통번역 활동에 대한 실적평가는 별도로 정한다.
- (6)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근무 경험자의 경우 근무경력, 업무실적, 포상실적 등의 평가는 별도로 정한다.

4. 임용 교원의 직위 및 호봉책정

가.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직위는 교육 및 연구 경력과 연구실적에 따라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신입교원 임용 시 직위별 교육 및 연구경력과 연구실적 충족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용직위	교육 및 연구경력 최소기준	평가대상기간	연구실적 평가기준 점수
조교수	4년	최근 5년 이내	1,000점 이상
부교수	7년	최근 7년 이내	2,100점 이상
교수	10년	최근 9년 이내	3,000점 이상

주1) 상기 연구실적 평가 기준 점수는 본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연구업적평가)를 따른다.

나. 신규임용 교원의 전직 경력이 국내 정규 2년제 내지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일 경우에는 이전의 교육 및 연구경력 연수, 연구실적 평가점수가 본 대학교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과 동일한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다. 외국의 정규 4년제 대학 재직 시의 직위는 국가에 따라 국내 대학과 제도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직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 및 연구경력과 연구실적 평가에 따라 직위를 결정한다.

5. 신규임용 계약기간

신규임용 교원의 해당 직위별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기간	비고
조교수	2년 이내	상위법인 법인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최초 신규임용 기간 2년 이내
부교수		
교수		

Ⅲ. 세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Ⅳ. 시행시기

1. 이 지침은 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지침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지침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지침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지침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지침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지침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지침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6학년도 2학기 신규 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11.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Ⅱ. 교원임용 - 3. 임용 교원의 연구 실적평가 - 가.의 본문, 나.의 (6))
13. 가.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2020학년도 9월 1일 이후 임용된 신규교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첨 1]

대학교원임명제청자조서									
제청자	소속				직명	현직명	제청직명		
	성명						(호봉)		
	학력				담당 과목				
경력 사항	연구 경력	년월일	기간	직종		환산율	환산연수	비고	
	계								
	교육 경력								
		계							
	합계								
	제청평가	자격기준	경력연수			업적평가			
연구 경력			교육 경력	계	교육	연구	봉사	계	
평가결과									
총평	자격기준해당유무		합당·불합당		구비서류상황		완료·보충		
심사 년월일	20 . .		심사자		확인자				
근무 조건									

[별첨 1-1]

연구실적 점수 산정표

성명 : 예정직위: 실적산정기간 : . . - .

발표 구분	저자명(전원)	제 목	게재지명	발행기관	발 표 년월일	산정 점수	등재 여부

※ 발표구분 : ① 박사학위 논문 ②국내외 학회 학술지 논문 ③국내외 학술회의 논문 ④학술저서
 ※ 최근 발표된 실적부터 작성하십시오.

[별첨 2]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률 산출기준

경 력 내 용	교수자격인정심사 준칙	환산 인정율	비고
1.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좌동	
②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좌동	
③학력인정을 받는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	100	좌동	
④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	60	좌동	
⑤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	50(단, 주당5시간 이하는 30%, 주당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좌동	7시간 이상 50%
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학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0 - 70	70	
②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40 - 70	40	
③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 70	40	
다. 조교 및 체육 코치 등			
①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50 - 70	70	
②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50 - 70	50	
2. 연구경력			
가. 최종 학위취득자			
①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	100	좌동	3년 이내
②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	100	좌동	2년 이내

경 력 내 용	교수자격 인정준칙	환산인 정률	비고
나.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 등			
①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단,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의 연구경력	70	좌동	3년X0.7 이내
②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70	좌동	2년X0.7 이내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①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100	좌동	
라.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 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좌동	
3. 산업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①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근무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좌동	
②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	70	좌동	
③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60 - 100	70	
나.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			
①공과계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대기업체 등	50 - 70	50	
·중기업체	50 - 70	50	
②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50 - 70	50	
③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사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 70	50	
④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대기업체 등	50 - 70	50	
·중기업체	50 - 70	50	

경 력 내 용	교수자격 인정준칙	환산인 정률	비고
다.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			
①관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70 - 100	100	
②변호사 개업 또는 근무기간	70 - 100	100	
③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감정사·토지평가사·변리사 개업 또는 근무기간	50 - 70	70	
④한국 해양대학, 부산 수산대학,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 1등 항해사(기관사)이상 면허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 항공대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00	좌동	
라. 의사등 근무경력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50 - 70	70	
②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50 - 70	70	
③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교육부장관 인정기관 전문 의사 근무	50 - 70	70	
④국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 간호원 근무경력	50 - 70	70	
마. 성직자 근무경력			
①신학대학 졸업자의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	50	좌동	
②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50	좌동	
바. 외국공관 근무경력			
①대학에서 외국어과를 전공한 자의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좌동	
사. 예·체능 관련 단체 주요임원			
①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	50 - 70	70	

[양식/교인-1]

교수임용지원서

20 학년도 제 학기						접수번호		
지원학부					학부 학과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 (가로 5cm x 세로 4cm)		
지원분야								
성 명	(국문)	(영문)	(한문)					
1.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국 적			병 역	필 · 미필 · 면제		
생년월일	19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				
본 적								
현 주 소 (국내연락처)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자 택 :		
현근무지						직 장 :		
						핸드폰:		
					e-mail:			
결혼여부	기혼·미혼	배우자 직업		종 교				
2. 학력사항								
구 분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위취득 년월일	학 위 취득국	수 료 /과정 증	평점평 균 (G.P.A)
고등 학교	년 월 일- 년 월 일							-
학사	년 월 일- 년 월 일							/
석사	년 월 일- 년 월 일							/
박사	년 월 일- 년 월 일							/
학위 논문	석사	지도 교수			논문 제목			
	박사	지도 교수			논문 제목			

3. 경력사항[관련 증빙자료 제출]				
기	간	근무년월	근 무 기 관 명	직위(담당업무)
199	년 월 일- 199	년 월		
199	. . - 199	년 월		
199	. . - 199	년 월		
199	. . - 199	년 월		
199	. . - 199	년 월		
199	. . - 199	년 월		
20	. . - 20	년 월		
20	. . - 20	년 월		
20	. . - 20	년 월		
20	. . - 20	년 월		
20	. . - 20	년 월		
4. 기타사항(사회단체 참여현황 등)				

위 기록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또는 서명

금강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교인-2]

연구실적 목록

지원분야 :

성명 :

발표구분	저자명(전원)	제 목	게재지명	발행기관	발 표 년월일	등재 여부

※ 발표구분 :

- ① 박사학위논문 ② 국내학술지 논문 ③ 국외학술지 논문 ④ 국내학술대회발표 ⑤ 국외학술대회발표
⑥ 학술저서

※ 위 발표구분별로 최근 발표된 실적부터 작성하십시오.[심사용 이외에는 각1부씩 제출]

[양식/교인-3]

연구 및 수업 계획서

지원분야 :

성명 :

1. 현재 진행중인 연구

2. 향후 연구계획

3. 수업계획서

[양식/교인-4] <분과전형위원용>

기초심사(서류) 심사표

지원자 :

구 분	비율 (%)	배점	적 용 기 준	심사점수	
전공적격	30	일반분야	30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모두 동일한 경우	
			20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동일하나 학사과정이 다른 경우	
			10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모두 다른 경우	
		통연분야	30	석사과정(또는 박사)이 전공분야와 동일하고 실무경력이 우수한자	
			20	석사과정(또는 박사)이 전공분야와 동일하고 실무경력이 보통인자	
			10	석사과정(또는 박사)이 전공분야와 동일하고 실무경력이 미흡한자	
	부적격		초빙분야와 박사학위 전공 일치도 및 연구일치도가 상이한 경우		
학부성적	5	5	학부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3	학부성적이 90점 미만인 자		
연구 및 교육경력	20	20	4년제 정규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자, 또는 고등고시 합격자		
		15	6년 이상		
		10	3년 이상 - 6년 미만		
		5	3년 미만		
연구실적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20	20	600점 이상		
		15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0	500점 미만		
향후 연구계획 및 자기소개	5	0-5	연구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교수로서의 자질, 본교의 건학이념과 부합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사회 및 학회활동	5	0-5	사회 및 학회 활동이 우수, 보통, 미흡 정도로 판단함.		
기타	15	0-15	상기외 학교인지도등 서류심사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 부여		
계	100				

* 전공적격 항목에서 부적격일 경우 또는 연구실적에서 0점을 받은 자는 다른 항목의 점수에 관계없이 후보자서 탈락 처리함.

심사자 (소속)

(성명)

(인)

* 평가방법

1. 학부성적(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해당 전체 평점평균성적 / 해당교 평점 만점 * 100

2. 연구 및 교육경력

일반분야 : 해당 박사학위 취득후 경력만 산출(단, 4년제 전임교원, 고등고시 합격자는 학위취득일에 관계없음)

통역분야 : 해당 석사학위 취득후 경력만 산출

3. 연구실적

가. 박사학위논문 : 100점

나. 국내외학술지 논문 : 단독(100%), 2인(70%), 3인(50%), 4인(30%), 5인(100/저자수 %)

1)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환산율 2배적용) 또는 각 학문분야별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학술지 : 200점

2)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 포함)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평가 A급(B급 포함) 학술지 : 100점

3) 기타 학술지 : 50점

다. 국내외학술대회 발표논문 : 학술지 논문 기준 점수의 50% 부여(기타학술지 제외)

라. 학술저서 : 단독기준 100점. 단,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는 국정 또는 검인정인 경우 70점 부여

[양식/교인-6] <신임교원전형위원회 작성용>

2차 후보자선정 심사표

심사자 : (인)

채용 분야	성 명	기초심사 (서류) 점수(평균)	전공심사(연구실적)			기초심사(서류) + 전공심사(연구실적)	선정여부	비 고
			심사위원	점수	논문 합당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논문합당도에서 50% 이상의 심사위원이 불합당으로 판정하는 경우 점수에 관계없이 후보자서 탈락 처리함.

[양식/교인-8] <신임교원전형위원회 작성용>

공개강좌 및 면접평가서

지원학부(학과) :

후보자 성명 :

항 목	평 가	등 급
학력 및 경력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학교 발전에의 기여도		
내용 전달의 조직성과 명확성		
질문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총 합 의 견		
판 정		

평가자

성명 :

(인)

- ※ 지원자의 제출서류, 전공심사(연구실적)결과, 공개강좌 평가결과, 면접 등을 토대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 등급은 수(5점), 우(4점), 양(2점), 가(1점)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 ※ 판정은 교수채용에 있어 합당, 불합당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 ※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평가에서 “양”, “가”의 평가를 받을 경우 다른 항목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불합당” 평가한다.
- ※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처리[취득점수(등급)/ 전체점수(위원, 등급)]

[양식/교인-가]

강의전담교원 임 용 지 원 서

20 학년도 제 학기						접수번호		
지원학부	학부				학과	사 진 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 (가로 5cm x 세로 4cm)		
지원분야								
성 명	(국문)	(영문)	(한문)					
1.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국 적		병 역	필 · 미필 · 면제			
생년월일	19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				
본 적								
현 주 소 (국내연락처)	(우편번호 : -)			진 화 번 호	자 택 :			
현근무지					직 장 :			
					핸드폰: e-mail:			
결혼여부	기혼·미혼	배우자 직업		종 교				
2. 학력사항								
구 분	기 간	학 교 명	진 공	학 위 취 득 일	학 위 취 득 국	수 료 /과 정 증	평점 평균 (G.P.A)	
고등학교	19 . - 19 .		-	-			-	
학 사	19 - 19						/	
석 사	20 - 20						/	
박 사	20 - 20						/	
학위 논문	석사	지도 교수		논문 제목				
	박사	지도 교수		논문 제목				

3. 경력사항							
기	간	근무년월	근 무 기 관 명	직위(담당업무)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4. 기타사항(사회단체 참여현황 등)							

위 기록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① 또는 서명

금강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교인-나-1] <분과전형위원용>

강의전담교원(외국인 어학) 기초심사(서류)표

지원자 :

구 분	비율 (%)	배점	적 용 기 준	심사점수
채용분야	30	30	채용분야와 동일한 경우	
		25	채용분야와 다르나 강의가 가능한 경우	
교육 경력	30	30	2년제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25	2년제 및 4년제 대학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그 외의 교육기관(학원포함) 2년 이상	
		20	그 외의 교육기관(학원포함) 2년 미만	
학위	10	10	석사이상	
		5	학사	
기타	30	0-30	상기 외 항목 외에 성실성과 발전성을 감안하여 서류심사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 부여	
계	100			

심사자 :(소속)

(성명)

(인)

[양식/교인-다] <분과전형위원회 작성용>

1차 기초심사(서류)통과자 선정 보고서

학부(학과) :

20 학년도 신입교원 채용 1차 기초심사(서류)통과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채용분야	후보자	
	접수번호	성명

※ 첨부 : 기초심사(서류)기준 및 심사표 각1부.

20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분과전형위원회 위원장 (인)

금강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교인-라] <신임교원전형위원회 작성용>

강의전담교원(외국인 어학)면접평가서

지원학부(학과) :

후보자 성명 :

항 목	배 점	평 가	심사점수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0 ~25		
학교 발전에의 기여도	0~25		
내용 전달의 조직성과 명확성	0~25		
교육 적극성	0~25		
합계			

평가자

성명 :

(인)

※ 지원자의 제출서류, 기초심사(서류)결과, 면접 등을 토대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서류 : 20% 면접 : 80%

